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1998. 4. 20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4.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98. 4.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윤석현)

가. 제안이유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판매시설 건축을 완화하는 골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97. 9. 9 대통령령 제15476호)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위원구성기준 개정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기능 개정
- 대지 안의 조경에서 식수 등 조경 제외 건축물 중 축사 용도삭제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식물관련시설 허용
- 생산녹지지역에서 조례로 정하여 적용토록 한 창고시설을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토록 개정되었기 창고시설을 조례에서 삭제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판매시설 허용조건을 구체화함
-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을 구체화함
- 온돌시공에 관한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0조제6항 규정에 의거 삭제됨에 따른 조례 삭제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8호
의결년월일	98. 5. 2 (제60회)

제출년월일 : 1998. 4.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판매시설 건축을 완화하는 골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97. 9. 9 대통령령 제15476호)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입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위원구성기준 개정(안 제5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기능 개정(안 제7조)
- 대지 안의 조경에서 식수 등 조경 제외 건축물 중 축사 용도삭제(안 제22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식물관련시설 허용(안 제28조)

- 생산녹지지역에서 조례로 정하여 적용토록 한 창고 시설을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토록 개정되었기에 창고시설을 조례에서 삭제(안 제38조)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판매시설 허용조건을 구체화함(안 제39조)
-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을 구체화함(안 제68조)
- 온돌시공에 관한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0조제6항 규정에 의거 삭제됨에 따른 조례 삭제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에너지”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능)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9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6호·동조제2항제1호카목 및 동조제2항제2호버목에 “식물관련시설”을 신설한다.

제38조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 내지 14호를 제8호 내지 13호로 하며, 제13호 중 “증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39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제68조제2항중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0장 및 제73조를 삭제한다.

제11장을 제10장으로 하고, 제74조 내지 제82조를 제73조 내지 제81조로 한다.

제12장을 제11장으로 하고 제83조 및 제84조를 제82조 및 제83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에 관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장 건축위원회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구성) ① ~ ②(생략)	제5조(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환경, 회화, 조경, 조형예술 및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환경, 회화, 조경, 조형예술 및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 ⑤(생략)	④ ~ ⑤(현행과 같음)
제7조(기능) ①건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기능)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9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영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법·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4장 대지안의 조정	제4장 대지안의 조정
제22조(대지안의 조정) ①(생략)	제22조(대지안의 조정) ①(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측사</u>	<u>〈삭제〉</u>
8. (생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제6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6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2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①(생략)	제2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①(현행과 같음)
1. ~ 15(생략)	1. ~ 15(현행과 같음)
<u><신설></u>	16. <u>식물관련시설</u>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 차 (생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u><신설></u>	<u>카. 식물관련시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 머 (생략)	가 ~ 머 (현행과 같음)
<u><신설></u>	<u>버. 식물관련시설</u>
제38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 지 및 제한) (생략)	제38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 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창고시설</u>	<u>〈삭제〉</u>
9. ~ 13. (생략)	8. ~ 12. (현행 제9호 내지 제13호와 같음)
14. <u>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u>	13. ----- (<u>건설기계</u> ----- -----)

현행	개정안
제39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제39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12.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제68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생략)	제68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현행과 같음)
②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	②-----16층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 이상인 공동주택----- -----
제10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73조(온돌의 시공)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에게 등록한 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돌시공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자 2. 온돌시공상 잦은 하자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기술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동항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현행	개정안
<u>제11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u> <u>제74조 ~ 제82조(생략)</u>	<u>제10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u> <u>제73조 ~ 제81조(현행 제74조 내지 제82조와</u> <u>같음)</u>
<u>제12장 보칙</u> <u>제83조 ~ 제84조(생략)</u>	<u>제11장 보칙</u> <u>제82조 ~ 제83조(현행 제83조 및 제84조와 같</u> <u>음)</u>